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김선중	561027-*****	경기도 파주시
김향순	55080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미애	670226-*****	경기도 양평군
조명애	701020-*****	강원도 평창군

###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3. 서류의 내용 :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선중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선중은 2019.6.7. 본인이 모집한 (주)□□□□보험 '■■■■■■■■■■■■' 1건 (초회보험료 ▲.▲ 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김향순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향순은 2019.5.28.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 '■■■■■■■■■■■■' 1건 (초회보험료 ▲.▲ 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정미애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미애는 2019.5.8.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의 '■■■■■■■■■■■■' 1건 (초회보험료 ▲ 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주)○○○○○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조명애	□□□□보험(주) 前 소속 보험설계사 조명애는 2011.1.31. ~ 2019.4.25. 기간 중 '■■■■■■■■■■■■' 등 8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oonsie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